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8. 6. 17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98. 6. 9

○ 회부일자 : '98. 6. 9

다. 상정일자 :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8. 6. 17)

2. 제안설명 요지

(기획관리실장 : 조 영 창)

가. 제안이유

○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환경관리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업무 위임

〈환경지도과〉

- 권한위임
 -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업무
 - 년차보고서의 제출
 - 청문(단,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권한은 제외)업무 신규위임
- 소음·진동규제법(97.3.7)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97.6.26), 대기환경보전법('97.8.28)개정, 호소수질관리법('97.8.28)제정 등 관련법규 변동에 따른 조문정비

〈경 제 과〉

- '97. 7. 1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령이 시행되어 “도·소매업진흥에 관한 업무”가 “대규모 점포에 관한 업무”로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공 업 과〉

- 전기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호 개정으로 위임내용 삭제
 -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수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위탁
 - 공사계획변경명령업무는 폐지

〈치수과〉

- 지방·준용하천의 하수를 이용한 죽목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허가에 관한 사항중 2개 시군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도에서 관장함이 타당하여 시군 위임에서 제외 규정 삽입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1항13호 개정으로 유·도선 요금·운임사항이 직접 시군에 위임되어 본조례로 위임한 내용삭제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동사업 및 시설 준공검사를 하는 시군에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태 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의 배출시설신고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이며

환경지도과 소관에 있어서는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년차보고서의 제출, 청문은 추가로 위임되는 사무이며

기타 사무는 관련법규 변동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는 것이고

경제과 소관에 있어서는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 법령이 시행됨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는 것이며

공업과 소관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으로 인해 동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한 위임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치수과 소관에 있어서는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11호 지방.준용하천구역안에서의 다음각 호에 관한 사항중 일부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30조제1항 13호의 개정으로 인해 직접 시군에 위임된 업무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사무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사업 및 시설준공검사를 하는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같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 및 일부사무의 위임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 6명, 찬성 6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